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n Korea



이 안내서는 난민법(2013. 7. 1.부터 시행)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난민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                          |                                   |    |
|--------------------------|-----------------------------------|----|
| 제 1 장                    | 한국 난민인정제도                         | 04 |
| 제 2 장                    |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 06 |
| 제 3 장                    |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 08 |
| 제 4 장                    | 난민신청자 권리와 처우                      | 10 |
| 제 5 장                    | 난민인정절차                            | 14 |
|                          | 1.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    |
|                          | 2.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    |
|                          | 3. 난민인정심사                         |    |
|                          | 4.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허가                 |    |
|                          | 5.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    |
|                          | 6. 난민인정심사의 종료                     |    |
|                          | 7. 난민인정자에 대한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    |
|                          | 8.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    |
|                          | 9.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    |
|                          | 10. 난민인정의 제한                      |    |
|                          | 11. 난민인정의 취소와 철회                  |    |
| 제 6 장                    | 이의신청                              | 28 |
| 제 7 장                    | 난민여행증명서                           | 30 |
| 별 첨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br>유엔난민기구 및 난민지원단체 | 32 |
| 난민법 / 난민법 시행령 / 난민법 시행규칙 |                                   | 35 |

# 한국 난민인정제도

- 2013. 7. 1.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인정제도의 기반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2. 12.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3. 3. 3. 난민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난민관련 조항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2012. 2. 10.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난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3. 6. 12.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습니다.
- 특히, 2013년은 우리나라가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적으로 난민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 난민법에서는 박해를 받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통하여 난민 심사관으로부터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난민법상 규정된 처우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소송기간에도 난민신청자로서 지위가 유지되어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하고,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에게는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자격 인정,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의 입국허용 등의 처우가 보장됩니다.
- 인도적체류자는 취업활동이 허가되고,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의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의 초기 정착지원과 생계지원, 난민인정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 1.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3.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그 미성년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시 면접시험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http://www.hrdkorea.or.kr))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은 본인이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1.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도적체류자가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장 지정없이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면제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직은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 제한 분야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간내에는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기관, 단체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hi-korea)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확인서 제출)

※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확인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난민지원시설의 주거·의료·교육·운동 시설, 상담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난민신청자와 같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법에 규정된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 권리와 처우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1 절차적 권리

1.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됩니다.
3.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 등으로부터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난민면접조서의 열람, 복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열람은 1회당 500원, 복사는 1매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 2 체류 중 처우

1. 신청한 난민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허가는 22p 참조**
  -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타(G-1)체류 자격으로 6개월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으며,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받으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등 지원을 희망할 경우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에 취업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허가는 23p 참조**
  - 난민인정 신청을 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난민인정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정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주거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난민지원시설에서 6개월 범위에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1

## ‘생계비 지원’ 제도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 국가(법무부)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02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민인정을 신청한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3

## 언제 신청하나요?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생계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위 기간이 지나면 생계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 생계비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난민인정을 신청 할 때 생계비지원 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04

##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가셔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 입주자는 센터에 신청 가능

1.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2. 확인서
3.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단, 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접수증)
4. 본인 명의 국내 발급 통장 사본  
(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 부양가족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능



## 05

## 얼마나 지급되나요?

생계비는 ①센터에 입주한 사람과 센터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②생계비 지원 신청일부터가 아닌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4년 기준, 1인당 지급금액

| 센터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 |
|-------------------|----------------|
| 382,200원          | 267,540원       |

※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는 개인별 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06

##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자 중 매월 생계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출한 통장 계좌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immigration.go.kr>)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생계비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게시 및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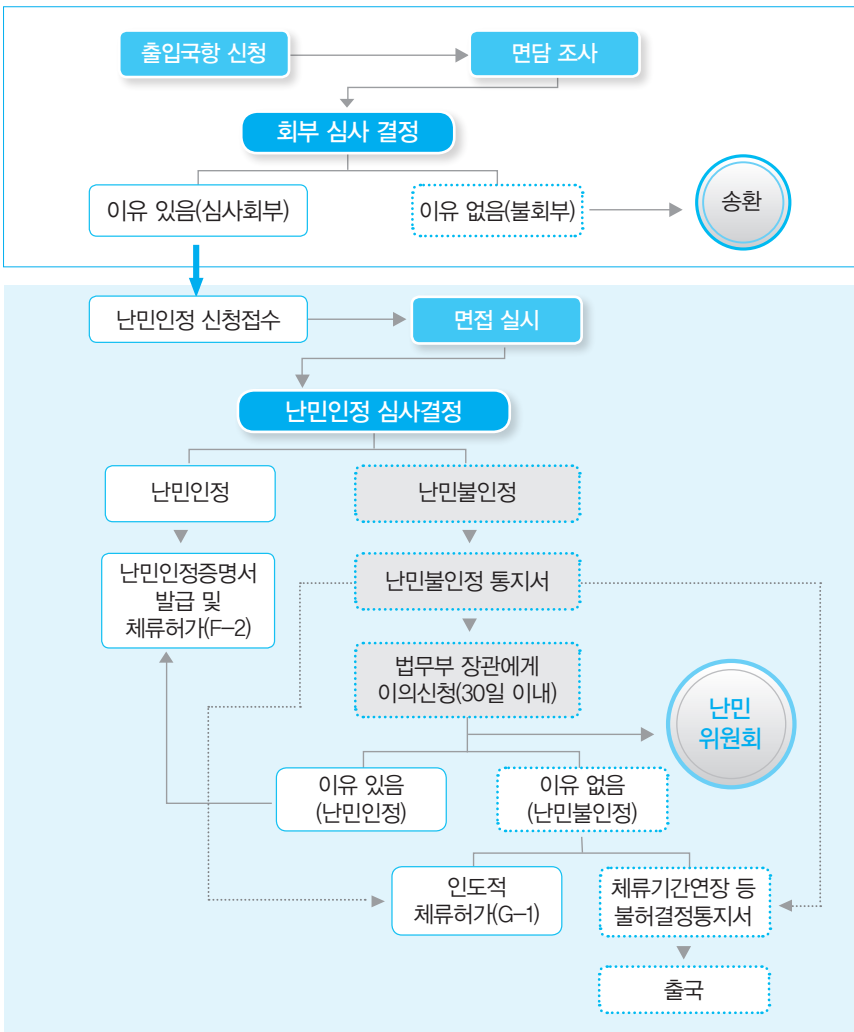


기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세요.

# 난민인정절차

## 1 출입국향 난민인정 신청

### 〈출입국향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1) 신청 대상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하여 출입국항으로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상륙하려는 외국인

### (2) 신청시기

-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3) 신청 사무소

- 출입국항으로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당일 입국 또는 상륙한 출입국항 관할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회부여부 결정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인정심사의 전(前) 단계인 회부여부 결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이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을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 ▶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위해자
- ▶ 비협조로 인한 신원 확인 불가자
-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난민인정 신청.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 불인정자 및 취소된 자의 재신청
- ▶ 난민협약 및 난민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 경제적 사유 등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

##### (5) 회부 결정 후 조치

-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신청 접수증이 교부되고 회부가 결정된 시점부터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보장됩니다.
-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입국 심사를 하여 입국을 허가합니다. 이때 거주지의 제한, 난민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등 일부 조건을 붙여 90일 범위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입국한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난민신청자는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거점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점사무소는 21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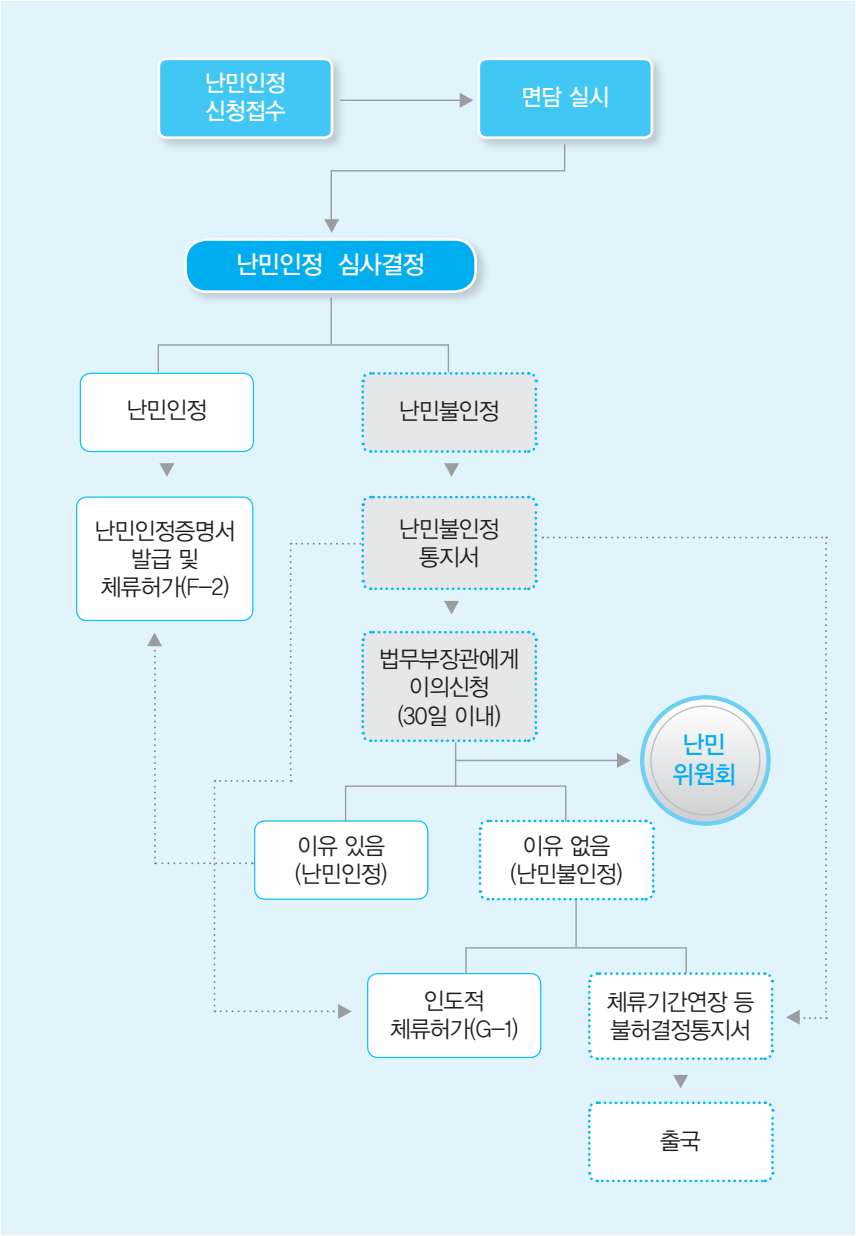


For Recognized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Status Applicants



## 2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 〈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



### (1) 신청 대상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2) 신청 시기

- 난민인정 신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가능합니다.

### (3) 신청 사무소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은 32p 참조**
-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 등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4) 신청 방법

-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신청자의 친척, 변호사가 그 신청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난민인정신청서
  - ※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그 서류에 본인과 접수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 신청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난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진술서 포함) 1부
- 사진 1장(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사진의 규격 등

-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3.5cm 사이일 것
-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자의 신체검사서 1부  
※ 신청자는 결핵,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 반응 여부를 포함한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시서류

- 등록외국인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 조건부입국허가 또는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서

#### (6)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하는 자료(진술서 포함)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난민인정심사

- 난민의 인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난민임을 주장하는 증거 또는 진술 등으로 난민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심사관 등이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자의 진술 내용의 사실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결정 합니다.
- ※ 법무부는 관할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접수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면접과 사실 조사 등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각 권역별 8개의 거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거점사무소 | 관할 사무소 및 출장소                                  |
|-------|-----------------------------------------------|
| 인천공항  | 인천공항                                          |
| 서울    |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김포, 대전, 춘천, 청주          |
|       | (출장소) 세종로, 안산, 평택, 오산, 서산, 천안, 고양, 동해, 속초, 고성 |
| 부산    | 부산, 대구, 김해, 울산, 창원                            |
|       | (출장소) 감천, 구미, 포항, 통영, 사천, 거제                  |
| 광주    | 광주, 전주                                        |
|       | (출장소) 목포, 군산                                  |
| 제주    | 제주                                            |
| 화성보호소 | 화성보호소                                         |
| 청주보호소 | 청주보호소                                         |
| 여수    | 여수                                            |
|       | (출장소) 광양                                      |

## (1)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부여

-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사진 1매, 여권, 여권 미제출 시 사유서 1부, 체류지 입증서류, 별도 수수료 납부

## (2) 체류기간연장허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매회 6개월 범위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면제

- ▶ 부여받은 체류기간 내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 이의신청 준비기간 중이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 ▶ 행정소송 준비기간 중이거나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 (3) 체류지변경신고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여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5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 (1)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전문직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체류기간 상한 6개월 범위 내)

- ▶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면제

### (3) 허가사항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이 날인되며(허가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기타 필요한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취업 분야

-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취업 제한 분야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건 등 위반자 처리

-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 통고처분 면제 후 체류허가(법 준수 확인서 제출), 2차 위반 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3차 이상 위반 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난민인정심사의 종료

### (1) 난민인정 신청 자진 철회

- 난민신청자가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에 ‘난민인정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원인이 해소되는 등 본국 상황이 바뀌어 스스로 난민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난민인정신청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한 경우
- ▶ 결혼이민(F-6)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려고 하는 경우
- ▶ 기타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등

### (2) 난민인정 심사 종료

-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응한 때
- ▶ 소재불명된 때(공시 송달한 때도 포함)
- ▶ 난민신청자가 출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때
- ▶ 한국국적을 취득한 때
- ▶ 사망 등 난민인정 심사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7 난민인정자에 대한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으로부터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습니다.  
※ 체류지 관할 이외에 사무소, 출장소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 난민으로서의 보호와 처우를 받을 때, 난민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8

## 난민인정자에 대한 체류허가

- 난민인정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서 거주(F-2)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사진 1매, 여권(여권 미제출 시 사유서 1부), 체류지입증서류, 별도 수수료 납부
-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 9

##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불인정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습니다.  
※ 체류지 관할 이외의 사무소, 출장소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 관할 이외의 사무소, 출장소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28p 참조

## 10

## 난민인정의 제한

- 난민신청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 난민인정의 취소와 철회

### (1) 난민인정의 취소

- 난민인정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 거짓 진술로 인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2) 난민인정의 철회

- 난민인정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 (3) 난민인정의 취소와 철회에 따른 조치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철회한 때에는 난민인정자나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회수합니다.
- 난민인정취소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28p 참조

# 이의신청

## 1 이의신청 절차

### (1) 이의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외국인
- ▶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받은 외국인

###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가 사무소장, 출장소장, 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 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이의신청 접수 사무소

- 이의신청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체류지 관할 이외의 사무소·출장소에서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인정됩니다.

### (4)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의신청서 1부(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첨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난민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난민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난민전문가 등으로 난민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됩니다.

### 3 법무부장관의 결정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 등을 심사·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체류지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소장,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1) 난민인정자에 대한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및 체류허가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되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자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인정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난민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난민인정증명서와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사진 1매, 여권과 별도의 수수료를 준비해서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거주(F-2)체류자격으로 3년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사무소 등의 사정에 따라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 (2) 난민불인정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교부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보호소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 받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기간동안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으로부터 난민신청자로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여행증명서

## 1 신청대상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해외에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체류지 관할 사무 소장, 출장소장에게 본인이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자가 민법 상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친척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 제출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 ※ 신청서는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우측상단 민원서식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진 1장



### 사진의 규격 등

-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

- 수수료 1만원(수입인지)

## (2) 제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3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및 재발급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방식이 전자식 여권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관련 법을 3년으로 개정 예정)
- 유효기간 중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입·출국이 가능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재입국기간을 한정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기간까지 대한 민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 출국한 난민인정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 기간내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 6개월 범위 내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1부
- 난민여행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 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사유서,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분실 또는 훼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보호소 현황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032-740-7015~7,9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02-2650-6212     |
|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본관 4층 401호    | 02-2650-6399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 051-461-3091~5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 032-890-6300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031-695-3800     |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02-2650-4631     |
|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051-979-1300     |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 064-723-3494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 053-980-3505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 042-220-2001     |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 061-689-5518     |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 031-828-9303     |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울산시 남구 돌길로 86 삼호빌딩 2층         | 052-279-8000     |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 02-2664-6202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 062-605-5207     |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 055-981-6000     |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063-245-6164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 033-244-7351     |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 043-230-9000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br>서울역출장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br>지하2층  | 02-362-8432      |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br>도심공항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아셈길 53                | 02-551-6923      |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br>세종로출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br>2,3층 | 02-731-1799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br>감천출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회관동 11층       | 051-254-3917     |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br>안산출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           | 031-364-3700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br>평택출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86          | 031-683-6937     |

| 기 관 명               | 주 소                                        | 연 락 처         |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br>오산출장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br>(오산공군비행장(K-55) 구내)      | 031-666-2677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br>구미출장소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70-27<br>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 3층 | 054-459-3505  |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br>포항출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35                         | 054-247-5363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br>서산출장소 |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6층                     | 041-681-6181  |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br>천안출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br>충남북부상공회의소 403호       | 041-621-1347  |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br>광양출장소 | 전남 광양시 중동 2길 23                            | 061-792-1139  |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br>고양출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중로 104번길 16               | 031-960-9310  |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br>목포출장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12번길 26                       | 061-282-7294  |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br>통영출장소 |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                             | 055-645-3494  |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br>사천출장소 |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번지                        | 055-835-4088  |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br>거제출장소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 055-681-2433  |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br>군산출장소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4                             | 063-445-3874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br>동해출장소 |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 033-535-5721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br>속초출장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로 26 속초항만지원센터                   | 033-636-8613  |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br>고성출장소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097                      | 033-680-5100  |
| 화성외국인보호소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 031-8055-7000 |
| 청주외국인보호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 49                   | 043-290-7512  |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 032-745-3330  |

## 유엔난민기구(UNHCR)

1.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2.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적, 비정치적, 인도적 유엔기구로서 1950년에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되어 1951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4.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접 상담, 전화, 이메일 상담을 통하여 비호신청절차와 대한민국에서의 권리와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 상담전화 : 02-773-7003,      • 상담요일 : 월, 화, 목, 금(수요일 제외)
- 상담시간 : 09:30~12:30,      • 이메일 : [info@unhcr.or.kr](mailto:info@unhcr.or.kr)
- 주소 : (우)100-842 서울시 중구 1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 홈페이지 : <http://www.unhcr.or.kr>, <http://www.unhcr.org>

## 난민지원단체

### 피난처(pNan)

난민에 대한 숙소를 지원하고 상담업무, 법률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 ▶ 전화 : 02-871-5381      ▶ 팩스 : 0505-447-4646
- ▶ 이메일 : [pnan@pnan.org](mailto:pnan@pnan.org)      ▶ 홈페이지 : [www.pnan.org](http://www.pnan.org)
- ▶ 주소 : (우)156-320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456 래미안1차 아파트상가 3층

### 난민인권센터(NANCEN)

난민숙소지원과 난민인권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 ▶ 전화 : 02-712-0620      ▶ 팩스 : 0505-503-0620
- ▶ 이메일 : [refucenter@gmail.com](mailto:refucenter@gmail.com)      ▶ 홈페이지 : [www.nancen.org](http://www.nancen.org)
- ▶ 주소 : (우)152-800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0-24

# 난민법 / 난민법 시행령 / 난민법 시행규칙





# 난민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출입국향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향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향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향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 및 관할 출입국향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

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등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

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사무소·출장소·보호소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사무소장등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민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사무소장등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괴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사무소장등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심리의 비공개)**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난민조사관)**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관련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적 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의 적용의 배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가를 할 수 있다.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료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조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 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 난민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 또는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

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제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  
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  
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  
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  
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  
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  
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  
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  
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  
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  
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  
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  
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  
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  
정을 마쳤을 것

**제7조(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① 난민심사  
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  
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②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  
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난민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  
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  
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  
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  
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  
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  
여금 제2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2.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  
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  
역을 한 사람

**제8조(통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  
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  
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  
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  
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  
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  
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  
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  
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

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난민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 부분을 특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신청서 또는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청된 면접조서등을 복사하여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면접조서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서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열람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는 사무소장등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제1항에 따른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당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료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난민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사람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부처나 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2.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난민지원시설)**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난민인정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사무소장등(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등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 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서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

## 난민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이하 “난민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제3조(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제시 방법 등)** ① 사무소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사무소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소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전담공무원 및 사무소등의 난민심사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열람·복사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열람: 1회당 500원
2. 복사: 1매당 50원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제8조(난민인정증명서 등)** ① 사무소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④ 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사무소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과 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사무소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등은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난민인정취소·철회 통지서)** 법 제22조 제3항의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① 영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재학)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 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주거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지원시설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은 주거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거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23조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난민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난민지원시설의 장은 난민지원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를 위한

##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발 행** 2015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T. 02-2110-4160 F. 02-2110-0381

**디자인** 디자인페이지 T. 02-2285-5278

※ 상기 자료는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